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요건 충족여부 통보에 대한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가입신청 금융기관		계좌번호	계좌개설일	

국세청장 통보내용

의견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2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
의
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유 의 사 항

의견서는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국세청으로부터 가입요건 충족 여부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